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82
----------	-----

2024. 6. 1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0. 강남구청장(사회보장과)

나. 상정의결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 11.)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로 변경함(안 제1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별첨)

(2) 입법예고(2024.4.26.~2024.5.16.)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바, 2024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말 15억2천9백만원이 조성되어 2024년도 조성계획(수입 32백만원, 지출 50백만원)에 따라 2024년말 15억1천2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음.
- 2024년도 기금사업은 안정적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자활사업장 공간확보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장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함. (사업장 참고자료 참조)
- 위와 같은 자활기금의 설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 바, 종전에는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¹⁾에서 자활기금 적립 규정을 담고 있었으나, 2021년

1) 개정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7월 같은 법 제18조의7²⁾로 이동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각주 참조)

-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서에도 자활기금의 법적 근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7로 밝히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전인 종전 규정을 담고 있는 관계로 상위법과의 체계적합성을 위하여 금번 조례개정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였음.
-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체계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2021.7.27>]

참고자료

강남지역자활센터 현황

□ 센터개요

- 지정일: 보건복지부지정 (*최초지정일 2001.7.1.)
- 기관위치: 서울 강남구 개포로 38길 12 (☎ 02-445-1801)
- 운영법인: 위드캔 복지재단 (대표자 이태근)
- 센터장: 박익현
- 인 력

계	센터장	실장	정규직	계약직
15명	1명	1명	7명	6명

□ 자활사업예산 : 4,540,280천원(국비 60%, 시비 28%, 시비 12%)

□ 자활사업현황(17개 사업, 3개 자활기업, 214명 참여)

(2024. 4. 30. 기준)

사업수		참여인원(명)	사업단명
계		214	
자활기업(3)		10	강남크리빙, 한우리환경, 위시마스터
사업단 (16)	시장진입형(9)	101	함께밥상, 엄마밥상,더마실카페(SR점), 더마실카페(세곡점),카드드림,새싹편의점,배송,명인세차,청소달인
	인턴·도우미형(2)	3	인턴형, 자활도우미
	사회서비스형(3)	24	행복목욕탕,몽땅만두,더드림한상
	시간제형(1)	22	미소가공
	청년자립도전(1)	1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게이트웨이과정(1)		42	게이트웨이

□ 자활기업현황

자활기업명	인정일	대표자	소재지	인원
강남크리빙	2016.07.01	이윤희외1인	개포로244, 광수빌딩 502호	4명
위시마스터	2017.08.01	안진수	삼성로69길 10,102호	2명
한우리환경	2019.04.01	윤호준외1인	개포로244, 광수빌딩 501호	4명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2
----------	-----

제출연월일: 2024. 5. 30.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사회보장과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로 변경함(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별첨)

(2) 입법예고(2024.4.26.~2024.5.16.)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제1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 ----- ----- -----.</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의안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사회보장과 사회7급 이설옥(02-3423-5874)